

#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6. 3. .

제 출 자 : 하남시장(상수도과)

## 1. 제안이유

-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 및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녀수별 사용량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조문 일부개정(안 제42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 및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녀수별 사용량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,
- 「수도법」 제38조 및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53조의2에 따라, 수도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에 따라, 기존 감면 규정을 확대하려는 것임.
- 다만 기존 조문과의 통일성을 위하여, ‘제공미터를 감면’을 ‘세제공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’으로 일부 어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됨.